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신고관청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규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 및 근거법규 조정(안 제2조)

1) 별표 2: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권한 신설

나. 근거법규 및 자구수정

1) 위임사무 근거법규의 제·개정 등에 따른 사무위임 근거법규 제명 수정

2) 지나치게 세분화된 사무 정리 및 근거법규 제명 수정

다. 위임사무 삭제

1) 관련사무 폐지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 적십자회비 부과·징수 사무 삭제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사무의 권한위임사항(제2조 관련)

구분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내무 행정	1.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전문경력관, 전담직위에 임용 된 공무원, 행정직군 속기직렬 · 방호직렬공무원,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 위생직렬· 조 리직렬· 간호조무직렬· 운전 직렬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신규, 전보, 승진임용 (상당 계급 승진,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	지방공무원법 제6조	의 회 사 무 국 장
		나.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	의 회 사 무 국 장
		다.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	의 회 사 무 국 장
	2. 인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6급 이하 일반직 및 지도직 공무원(지도사에 한함)의 보직부여 및 소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	출 장 소 장, 직속기관장, 사 업 소 장
	3. 공무원 복무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청내 방호 및 제복무 관리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출 장 소 장
		나. 일일명령(당직, 비상근무, 출장 등)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구미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출 장 소 장
		다. 문서의 접수 및 발송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6조, 제18조	출 장 소 장
재무 행정	1.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진신고 납부 및 직권감면 업무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세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지방세법 제35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출 장 소 장
		나. 수입증지 환매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제8조	출 장 소 장
	2. 물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처분에 관한 업무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 제4조	출 장 소 장

구분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산림 행정	1. 산림 행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입산신고 해제권	산림보호법 제15조	출 장 소 장
		나. 산불예방 및 진화단속	산림보호법 제33조부터 제41조까지	출 장 소 장
		다. 산림 기본 통계	통계법 제3조	출 장 소 장
		라. 입목의 등록에 관한 사항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출 장 소 장
산업 행정	1. 농업 및 농지에 관한 다음 사항	가. 농촌생활환경 정비 업무	농어촌정비법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	출 장 소 장
		나. 농업법인 육성 및 지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출 장 소 장
		다. 농지이용증진	농지법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출 장 소 장
		라.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농지법 제62조	출 장 소 장
		마.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8조	출 장 소 장

구미시 사무의 권한위임사항(제2조 관련)

구분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내무 행정	1.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속 직원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처리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읍 면 동 장
		나. 파견 또는 주재직원의 복무에 관한 지휘 감독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읍 면 동 장
		다. 일일명령(당직, 출장, 비상근무 등)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구미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읍 면 동 장
	2. 사무인계, 문서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속 직원의 사무 인계	지방자치법 제106조 구미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읍 면 동 장
		나. 문서의 폐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43조	읍 면 동 장
	3. 인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 부여 및 당해 읍면동 내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	읍 면 동 장
	4. 주민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 1) 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신청인이 시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29조, 영 제47조 및 영 제4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 4)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회수 및 회수된 주민등록증 파기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읍 면 동 장
	5.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조례 중 다음의 권한	가. 융자금 대부신청 및 관리	구미시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제4조 및 제9조	읍 면 동 장
	6. 출입국 사실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읍 면 동 장
	<신설> 7.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읍 면 동 장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읍 면 동 장

구분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재무 행정	1.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당해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조정 징수	지방회계법 제21조	읍 면 동 장
		나. 부동산 시가 표준액 조사 사무	지방세법 제10조	읍 면 동 장
		다. 토지 건축물 과세자료 관리	지방세법 제121조	읍 면 동 장
	2. 회계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추정금액이 5,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1,0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그 이외의 것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	지방회계법 제8조 및 제10조 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읍 면 동 장
		나. 주민부담 1/2 이상인 공사의 집행	지방회계법 제8조 및 제10조	읍 면 동 장
		다. 5,000만원 이하의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	지방회계법 제8조 및 제10조 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읍 면 동 장
	3. 시유재산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유 일반 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 (단, 공유임야 대부 및 승낙, 분수림설정과 사후관리는 제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읍 면 동 장
	4. 물품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불용품 매각처리	구미시물품관리조례 제4조	읍 면 동 장
복지 환경	1.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의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24조	읍 면 동 장
		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 조사 및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 제24조, 제29조	읍 면 동 장
	2.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장애인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읍 면 동 장
	3.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지정폐기물 제외)	가.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8조	읍 면 동 장
		나. 환경미화원 관리 감독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	읍 면 동 장
		다.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1조	읍 면 장

구분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라. 청소장비관리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	읍 면 동 장
		마. 관할 청소구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제15조의2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1조	읍 면 장
		바. 공중용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	읍 면 동 장
		사. 규격봉투 판매업소 지정신청 전달 및 업소관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	읍 면 장
		아. 시민의 청소 계몽 지도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	읍 면 동 장
		자. 재활용품 수집단체 지정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8조	읍 면 동 장
		차. 재활용품수집단체 관리 보관시설 설치 및 장비 유지관리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8조	읍 면 동 장
	4.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신고대상건축물의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하수도법 제34조, 제35조	읍 면 장
		나. 신고대상건축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준공검사	하수도법 제37조	읍 면 장
		다.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및 준공검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15조, 제41조	읍 면 동 장
		라.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읍 면 동 장
	5.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 화장, 개장의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읍 면 동 장
		나. 공설묘지 사용 허가	구미시 공설묘지설치 및 사용조례 제4조	읍 면 동 장
산업 행정	1.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법 제8조, 제8조의2	읍 면 동 장
		나. 자경증명의 발급	농지법 제50조	읍 면 동 장
		다. 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5조	읍 면 장

구분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경제 통상	1.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장 사용의 허가, 취소, 제한 및 변경사항의 신고 사용료의 부과, 징수	구미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읍 면 동 장
		나.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구미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읍 면 동 장
		다. 사용자에 대한 공익상 설치, 원상회복명령 및 기타사항 지시	구미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읍 면 동 장
	2. 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이륜차의 사용신고 등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읍 면 동 장
		나. 이륜자동차의 번호판부착 및 봉인 등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읍 면 동 장
		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규정	자동차관리법 제52조	읍 면 동 장
건설 도시	1. 도로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도로 일시 점용시설 허가(굴착제외) 및 일시사용 허가	도로법 제61조	읍 면 장
		나. 점용료 조정 징수	도로법 제66조	읍 면 장
		다. 도로 원인자 부담금 징수	도로법 제91조	읍 면 장
	2. 가로수 관리의 다음의 권한	가. 가로수 유지 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읍 면 장
	3. 상하수도 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수도법 제55조제2항	읍 면 장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소 관 부 서		총 무 과
입 안 자	과 장	박 주 영
	담 당	강 유 현
	담 당 자	박 민 주 (480-6773)